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 계약서

○ 서비스 신청자(갑)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급	요양인정번호	
본인부담 경감구분	☐ 일반(15%) ☐ 기타감경(9%) ☐ 기타감경(6%) ☐ 국민기초(0%) ☐ 의료급여(9%) ☐ 의료급여(6%) ※ 본인부담금 경감률은 건강보험공단의 심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보호자)

성명	(인) (“갑”과의관계 :)
주소	
연락처	E-mail

○ 서비스 제공기관 (을)

장기요양 기관명	더공감방문요양센터	[대표자 : 유소정 : (인)]
주소	충남 서산시 예천동 223 (예천1로 72) 104호	
연락처	041-666-2722	팩스 041-665-2722

○ 급여 이용 및 제공 시간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방문요양 이용시간(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시 분 오후 시 분 ~ 시 분
방문요양 이용시간(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시 분 오후 시 분 ~ 시 분
방문요양 이용시간(3)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시 분 오후 시 분 ~ 시 분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3은 1일 3회 이용할 경우 기재
이용시간(2)								
이용시간(3)								

급여종류	서비스시간	서비스횟수	서비스수가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15%, 9%, 6%, 0%적용)
방문요양(1)					
방문요양(2)					
방문요양(3)					
합 계					

※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매월 서비스청구 시 서비스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로 한다.

2. 제 1항의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서비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3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1. 장기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가사활동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또는 교통비
 - 2)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3)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시간 외 제공되는 가사 간병 서비스 등
3.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4조(서비스 제공)

1. “을”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기의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2. “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이하 “공단운영센터”라 한다)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전송(RFID)하거나,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3.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1일 3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1일 3회 방문급여를 제공 할 수 있는 범위는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 19조”에 따른다.

제5조 (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 1) 월 이용료 납부
 -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 이용
 -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대리인”에게 통보
 - 3) 급여제공 중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7) 기타 “갑” 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협조
3. “대리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을 한다.

- 1) 제 1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장기요양 인정등급 및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 3) 기타 “갑” 및 “대리인”과“을”이 서비스의 계약 변경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고시등 정책 변경으로 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 변경계약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 한다.

제7조 (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제 1 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제 3 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4)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대리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제 1 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6) “갑”이 월 5 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7)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해지)

1. “갑” 또는 “대리인”이 제7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제 7 조제 2 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식 별지 제 2 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 (장기요양급여 비용)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10조 (이용료 납부)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의한다.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고 “갑”또는“대리인”에게 (익월5일) 까지“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을 통보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4. 청구금액의 계좌는“기업은행 529-075338-01-025 유소정 더공감방문요양센터”로 하며, 입금일은(매월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1조 (건강관리)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2. “을”은 장기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위급 시 조치 및 통지사항)

1.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대리인”이 지정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대리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 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4. “갑”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으로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 “갑”이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갑”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붙임1)을 서면으로 한다.
4. “갑”은 “을”이 수집 및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14조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 또는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 또는 “대리인”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1) 장기요양원 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장기요양원 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대리인”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을 하였을 때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5)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급여 서비스 외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간 별도로 협의한 비급여 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 및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6조 (분쟁해결방법)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대리인”)또는 “을”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3. 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 또는 “대리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더공감방문요양센터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 합니다.

“갑” 이용자 (인)

“대리인(보호자)” (인)